

第1種
損害査定業務 委任契約書

2014.4月

위임인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수임인 : 리카을 화재 캐싱 각종각손해사정 (주)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間的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第1種 損害査定業務 委任契約書

상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와 리카온화재해상보험(주) (이하 "수임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개별적인 손해사정업무의 위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할 업무처리 방법 및 권리와 의무를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임인·수임인간의 구체적인 위임물건, 위임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관련법규 준수 및 청렴계약조항)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로서 위임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한다.

- ① "위임인"과 "수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며,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비롯하여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함을 인지한다.
- ② "위임인"과 "수임인"은 상호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수임인"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부터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위임인"의 감사파트 또는 장기손사기획파트에 통보하며, 통보받은 "위임인"은 통보내용과 통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제3조 (업무의 위임)

- ① "위임인"은 "위임인"이 인수한 보험계약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임인"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및 원인의 조사, 보험목적의 현황 및 손해상황 조사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보험목적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사정, 기타 손해액 사정에 필요한 사항
4. 보험금 산출, 기타 보험금 사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임 대상은 "위임인"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한다.

③ "위임인"은 전항에 의한 업무를 "수임인"에게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을 제한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임인"은 별표1. 「IV. 보험사기 조사」 대상건에 대해서 필요시 "위임인"의 보험사기 조사부서와 협의하여 "수임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수임 절차)

① "수임인"은 "위임인"으로 부터 업무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자 등과 협조하여 수임된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윤리서약서」(별첨 #2)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별첨 #3)와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별첨 #4)를 준수하며, 직원들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으로 부터 수임한 건에 대해 추정지급보험금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해 손해사정담당자를 배정하며, "위임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추정 지급보험금에 따른 업무담당자 배정 기준」

| 보종 | 추정지급보험금 | 손해사정담당자 |
|-----------|----------|-----------|
| 총 보종 | 1천만원 이상건 | 2년 이상 경력자 |
| 재물 및 배상책임 | 5천만원 이상건 | 5년 이상 경력자 |

※ 추정 지급보험금은 현장조사 전에는 「사고접수 내용상 추정되는 금액」, 현장조사 후에는 「현장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담당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의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담당자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사정 보고서 제출)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①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 의뢰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의뢰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현장조사보고서를, 20영업일 내에 손해사정 보고서를 "위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 발생사실의 확인 및 원인조사
2. 보험목적의 현황조사
3. 보험목적의 손해상황 조사
4. 보험목적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사정
5. 보험목적의 손해액 사정
6. 기타 손해액 사정에 필요한 사항

② 보험사고 또는 손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유로 前①항의 기한 내에 손해사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기한 내에 그 사유와 보고서 제출기한을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임인"의 시스템(PRM시스템 등) 內 과정관리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은 제1항의 손해사정 보고서에 손해사정담당자와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사정 중간안내)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이 있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손해사정 중간안내(별첨 #6)를 하여야 하고, "위임인"의 요청이 아닌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요청으로 중간 안내를 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인"과 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자 의무사항)

- ① "수임인"은 수임 당일(영업시간 초과시 그 익일 오전내) 내에 보험소비자(보험금청구권자,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유선 등을 통하여 진행과정 등을 안내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 ② "수임인"은 보험조사, 손해사정 등을 위해 보험소비를 최초 접촉할 때, 반드시 향후 주요 조사 및 손해사정 절차 등을 서면 (보험사고처리안내문, 별첨 #7)으로 전달하고, 이 후 동 절차가 변경된 경우 즉시 이를 보험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 ③ "수임인"은 보험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위해 피보험자 및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분쟁예상 사전 및 사후 통보)

- ① "수임인"은 손해사정 업무수행중 보험금청구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보험금의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손해사정 절차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쟁 예상보고(별첨 #5) 양식에 따라 위임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생 경위와 원인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별첨 #5-2 양식에 따라 분쟁 발생 후 1영업일 내에 해당 손사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수의 청구와 지급)

- ① "위임인"은 "수임인"이 수임업무를 완료하고 보고서 일체를 제출한 때에는 "손해사정 보수 산정기준(별첨 #1)"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 ②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임인"의 시스템(PRM시스템 등)에 기본보수 등 세부청구내역을 입력한 후 양식을 출력하고, "수임인"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임된 건 및 조사 대상 또는 물건을 제한하여 수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수임인" 양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 보수기준을 따른다.
- ④ 본 계약의 적용일 이전 위임건에 대해서는 위임 당시의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위임업무 양도금지)

"수임인"은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인"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임할 수 없다.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제11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① "수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임인"의 고객의 개인정보(이하 "고객정보"라 한다)를 본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 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정보를 사용(제3자에게 양도, 위임, 누설 등 포함)할 수 없다. 단, 본 계약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위임인"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수임인"은 고객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고객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고객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수임인"이 "위임인"의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보호정책(화면 인쇄 및 복사기능 차단,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 금지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수임인"은 자신의 임직원(피용인, 사용인 등 호칭을 불문하고 "수임인"의 관리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대리인 및 위임받은 자가 고객정보보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상기 임직원 등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 ⑤ "수임인"은 본 계약에 따른 위임업무가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달성 등이 달성된 경우 일체의 고객정보를 지체없이 반환 또는 폐기하고 "수임인"의 모든 시스템에서 삭제 하여야 한다.
- ⑥ "수임인"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고객정보 유출, 침해 등의 고객정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⑦ "위임인"은 "수임인"의 고객정보보호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임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임인"을 관리 및 감독(불시 점검 포함)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⑧ "수임인"은 "위임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관련 서류(전산파일 포함)에 대해 이미지 시스템에 등재한 후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고 분기별 1회 파기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⑨ "수임인"은 본조 ① 내지 ⑧의 내용이 포함된 고객정보 보호 내규를 보유하여야 한다.
- ⑩ 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제12조 (감사 및 품질 점검)

- ① "위임인"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한 "수임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 감사 및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임인"에게 보고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대내외 점검 또는 감사시 필요한 수검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위임인"의 수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3조 (업무 품질 평가)

- ① "위임인"은 "수임인"의 재무상황, 전문인력 보유규모, 전산망, 보안, 손해사정 전문성, 고객만족도, Reputation 등을 종합 평가 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위임인"의 평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임인"은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전 공지한 평가항목에 따른 분기별 평가결과를 반영 하여 본 계약 기간 중 위임 업무량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임인"의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될 만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 ③ "위임인"은 위임계약 체결 후 위 분기별 평가결과 내지 연간 업무 품질평가 결과를 차기 업무 위임계약 체결 성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지적재산권 보호)

- ① "수임인"은 본 계약 목적 이외에 "수임인"의 영업·홍보활동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임인"의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유·무형의 손해를 불문)가 발생한 경우 "수임인"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상 불이익 적용)

- ① "수임인"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위임인"은 "수임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을 약정한 보수에서 차감 후 지급할 수 있다.

본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 ② "수임인" 과 "수임인" 임직원의 업무상 부실·부정에 대해서는 "위임인" 과 "수임인" 간에 협의된 「손사법인 윤리경영 양정기준(첨부#8)」 상의 불이익 조항을 적용한다.
- ③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위임인"에 대해 손해(유·무형의 손해를 불문)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수임인"은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파산, 회생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 처분 등을 받아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주요 자산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4. 관계 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의된 부실장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 6. 본 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임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손해사정 보수, 기타 평가상의 이익을 위해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업무행위를 한 경우
- 2. "수임인"이 보험계약자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를 포함한 손사법인 윤리경영 양정기준 (별첨 #8)상 "위임계약 해지"에 해당되었을 때
- 3. "수임인"이나 그 직원이 고의적으로 손해액 평가를 왜곡하였을 때
- 4. "수임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임한 경우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5. "수임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고의나 중과실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6. 분기별 CS평가 점수가 2개 분기 계속하여 하위 10%에 해당되고, CS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업무 개선 노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7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전 공지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등급이 2개 분기 계속하여 하위 "10%" 에 해당되고, 향후 위탁업무 품질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8. "수임인"이 보안 또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위임인"의 점검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되지 않거나, 고객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여 "위임인" 또는 "위임인"의 고객에게 손해(유·무형의 손해 불문)를 입혔을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착수하지 않을 경우
 10. "수임인"이 "위임인"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업무상 분쟁, 민원, 소송 제기 등을 제기하거나, 다른 외부기관과 불법, 부정, 담합행위를 통하여 "위임인"의 이익을 침해하여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수임인"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12. 기타 "위임인"의 판단으로 "수임인"이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③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문서 등 일체를 "위임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① "수임인"은 제10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 1부를 "위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상기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계약 시 "위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제1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중에 "위임인"이 의뢰한 업무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수임인"은 동 업무의 완료시 까지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신규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위임일 당시의 유효한 위임계약서에 따른다. 단, 위임일 당시 유효한 위임계약서가 만료된 경우에는 본 계약서가 소급 적용 된다.

제20조 (분쟁조정)

- ①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 해석에 있어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위임인"과 "수임인"은 위 계약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4 년 4월 1일

위임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안 민 수 (인)

수임인 106-86-30223
리카온화기리상 임철상
가동자손해사정(주)
서울특별시 송진구 풍곡동 19-40 남영빌딩 5층
서 비 스 손 해 사 정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 # 별첨
- | | |
|------------------------|-----------------------------|
| 1. 제1종 손해사정 보수산정기준 | 2. 윤리서약서 양식 1부. |
| 3. 보안서약서 양식 1부. | 4. 고객 개인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1부. |
| 5. 분쟁예상보고 양식 1부. | 5-2. 민원 발생 원인 및 대책 보고양식 1부. |
| 6. 손해사정 중간보고 양식 1부. | 7. 보험사고처리안내문 양식 1부. |
| 8. 손사법인 윤리경영 양정기준표 1부. | |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제1종 손해사정 보수산정기준

1. 목 적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제1종 손해사정 위임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 업무"라 함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말하며, 손해액 사정업무와 보험금 사정업무를 포함한다.

2. 적용범위

위임인이 손해사정업무 중 일부만 위탁하거나 기타 개별적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보다 위임인·수임인 간의 협의가 우선 적용된다.

3. 타사 중복보험時 적용방식

- ① 1사고 1물건에 대하여 위임인의 타보험사(공제 포함)가 관련되어 각 보험사가 공동으로 1선임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보수를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비례 분담한다.
- ② 보험사별 선임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이 다른 경우 최고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련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4. 보수의 기준

- ①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별표 1. 손해사정 보수기준"과 "별표 2.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기 산정한 금액에 당해 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 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수 중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임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③ 의료심사 및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손해사정 보수와 별개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5. 일부 위탁 및 전부 위탁의 적용 보수

"4. 보수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종목이나 담보위험의 종류 또는 보험사고 일체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특정 손해사정법인에게 일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이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 보수 산정기준과는 별도로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보수의 추가 지급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위임 시 또는 위임처리 업무 종결 전에 위임인과 수임인이 협의하여 위임인이 결정한다.

7. 보수의 감액 및 부지급

① 수임인이 손해사정업무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대외기관에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위임인은 "4. 보수의 기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2에 따라 산정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i) 합리적인 사유없이 고의나 중과실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 ii) 보험약관 또는 보험조건을 사실 및 실무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

② 수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사실, 보험가액, 손해액 등 손해사정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통상적인 손해사정 절차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업무 수행 시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보수의 지급시기

위임인은 수임인이 최종 손해사정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 영업일 내에 보험금 지급 또는 소송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사정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서류 미비, 보고서 수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최종 손해사정 보고서의 보완 필요 등 위임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1. 제1종 손해사정 보수기준

별표 2. 제1종 손해사정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본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제1종 손해사정 보수기준 ('14년)

I. 손해액 기준방식

「II. 단순사고 적용방식」와 「III. 업무시간 기준방식」에 의하지 않는 모든 제1종 보험사고에 적용한다.

□ 손해사정 보수표

| 손해사정금액 | 요율 | 기준액(원) | 요율 가감산 요소 | | |
|-----------|-------|------------|-----------|------|-----------|
| | | | 감산율 | 가산율 | 조사자 지정가산율 |
| 3백만원 미만 | 기본료 | 515,000 | | | |
| 5백만원 미만 | - | 669,500 | | | |
| 1천만원 미만 | - | 747,780 | | | |
| ~2천만원 미만 | 5.57% | 1,113,200 | | | 10% |
| ~3천만원 미만 | 4.60% | 1,379,400 | | | |
| ~5천만원 미만 | 4.11% | 2,057,000 | | | |
| ~1억원 미만 | 3.17% | 3,168,000 | | | |
| ~2억원 미만 | 1.94% | 3,872,000 | -10% | +30% | |
| ~3억원 미만 | 1.61% | 4,818,000 | -20% | +20% | |
| ~5억원 미만 | 1.33% | 6,655,000 | | +10% | |
| ~10억원 미만 | 1.06% | 10,640,000 | | | |
| ~20억원 미만 | 0.78% | 15,680,000 | | | 20% |
| ~30억원 미만 | 0.71% | 21,420,000 | | | |
| ~50억원 미만 | 0.64% | 32,200,000 | | | |
| ~100억원 미만 | 0.28% | 별도규정 | | | |
| 100억원 초과 | 0.1% | 별도규정 | | | |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 보수 산정방식

1. 이 기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별 1사고 1물건을 단위로 하며, 손해사정업무를 수입하는 선임 손해사정사마다 각각 적용한다.
단, 공동건물의 경우 총손해사정금액은 각 피해세대별 손해액 확정금액을 합산적용하나, 각 세대별 피해수에 따라 아래 9항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2. 단체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피해수에 따라 아래 9항의 할증율을 적용하나, 피해 목적물별 거리, 평가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할증율을 가감할 수 있다.
※ 단체사고란, 하나의 위험(Peril)에 대해 하나의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다수 존재하거나, 발생장소가 다수 존재할 때 1개의 손사법인에서 일괄 업무처리 시 해당사고를 말한다.
3. 1사고에 대하여 1선임손해사정사가 2물건 이상의 손해사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물건당 기본료만을 지급할 경우에는 2물건까지는 기본료 정액을, 2물건을 초과하는 물건부터는 기본료의 50%를 적용한다.
4.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손해사정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위임자는 손해조사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6. 화재, 폭발, 풍수재 등 재물 전손사고의 손해사정 기본보수는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손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부보율이 50% 미만인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산의 경우 전수조사 시행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며, 손해사정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산정하여 위 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8. 손해사정업무 수행 중 위임인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확정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별표1. 손해사정보수표」의 "기본료"와 「별표2. 여비·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임인의 요청에 의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할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손해사정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Ⅲ. 업무시간 기준 방식」을 준용하되, 이에 따른 보수는 추정손해액의 50%를 기준으로 손해사정 금액별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대인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또는 피해세대수)가 5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이 때 피해세대수 구분이 가능한 경우, 피해 세대수를 우선으로 하여 적용한다.

| 구분 | 할증율 |
|------------------|---------------|
| 5 ~ 10인(세대) 미만 | 손해사정 보수의 1.2배 |
| 10 ~ 30인(세대) 미만 | 손해사정 보수의 1.5배 |
| 30 ~ 200인(세대) 미만 | 손해사정 보수의 2배 |
| 200인(세대) 이상 | 손해사정 보수의 3배 |

10.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11. 손해사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 보수를 산정한다.

| 손해사정금액 | 손해사정 보수 |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2,200,000원 + (손해사정금액-50억원) X 0.28% |
| 100억원 이상 | 46,200,000원 + (손해사정금액-100억원) X 0.1% |

□ 요율의 가감 적용

1. 요율은 표준요율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인은 난이도, 투입시간, 조사자의 전문성 및 노력도 등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위임인이 수임인의 직원 중 조사자를 지정하는 경우 조사자 가산요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3. 위 1항과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기본요율 × (1 + 2)의 방식으로 최종 요율을 적용한다.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 현장활동 보수 (손해사정금액 10억 초과건)

1. 기준 : 현장활동 5회 초과 + 총동원인원 10인 초과
2. 대상 : 현장활동 1회당 업무시간 6시간 이상 (이동시간 포함)
3. 경력별 보수

| 경 령 | 인당 보수 |
|--------|-------|
| 5년 미만 | 10만원 |
| 10년 미만 | 20만원 |
| 10년 이상 | 30만원 |

※ 적용례 : 조사자 2인(10년 미만)이 현장조사 10회 실시

- ① 현장활동 10회(>5회)이고 총인원 20인(>10인)으로서 보수 적용기준 충족
- ② 적용보수 = 10인 (20인-10인)×20만원(10년 미만) = 200만원

※ 상기 보수 적용인원(10인)에 대하여 일비 중복적용 불가

※ 위 '보수 산정방식' 제9항의 집단사고 할증을 적용 시 중복적용 불가

II. 단순사고 적용방식

□ 적용대상 및 보수기준

| 대 상 건 | 보 수 |
|--|------|
| 가계성 도난보험 구내치료비 | 30만원 |
| 차량 파손 사고 | |
| 손해액 3백만원 이하 대물 사고 가입한도내 실손담보로 손해액 5백만원 이하건 | 33만원 |
| 현장조사 시행건으로 청구포기 등으로 실질적인 사고조사 및 손해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 |

□ 산정기준

1. 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I.손해액 기준방식」에 따른 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난이도, 투입시간, 조사자의 전문성 및 노력도 등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임 시 또는 위임처리 업무 종결 전에 위임인과 수임인이 협의하여 기본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위임인이 결정한다.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3. 현장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선 확인을 통한 사고조사, 면책, 청구 포기 의사 등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노력도, 성과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50%를 지급한다.
4. 위 대상건 중 "가계성 도난보험"은 별표 2.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중 "일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업무시간 기준 방식

□ 적용대상

1. 손해평가 대상이 유체물·對人이 아닌 권리, 금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 ① 대상 : BBB, DDD, BI(장기보험 제외), D&O, 상금보험, 잔존물회수보험, 권원보험, Mortgages 관련 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변호사, 법무사 등 / 의료배상 제외), 설계감리보험,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 해외PL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험종목
 - ②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의 금전·담보물 등 도난사고는 「I.손해액 기준방식」의 기본보수기준을 따른다.
단, 배상책임보험 中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지자채업무배상책임보험은 당사자간 사전 협의에 따라 同 「업무시간 기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소송상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감정 대응 등 소송 발생건에 대한 대응업무에도 준용할 수 있다.

□ 보수기준

| 조사자 경력 | 시간당 보수 |
|---------------|----------|
| 5년 미만 | 50,000원 |
| 10년 미만 | 70,000원 |
| 10년 이상 | 90,000원 |
| 10년 이상 + 우수조사 | 120,000원 |

1. 보수산정시 시간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2. 건의 난이도, 노력도, 성과에 따라 해당 "시간당 보수기준"의 차상위 또는 차하위를 적용할 수 있다.
3. 조사경력은 해당 보종의 업무처리 경력 기준으로 한다.
4. 「손해액 기준 방식」이 적용되는 사고와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각각 적용한다.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입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IV. 보험사기 조사

□ 대상 및 지급기준

| 구분 | 대상 | 지급기준 |
|------|---|--|
| 사기입증 | 아래 ①+② 의 결과로 보험사기 해당 금액 부지급 ①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한 보험사기 입증 ②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 또는 민사판결(조정 결정 포함)로 보험사기 확정 |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 지급보험금의 10-30 배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함 (지급한도 2천만원) |
| 우수조사 | ①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한 보험사기 입증으로 해당금액 부지급 ②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민·형사소송(소추 포함) 진행되었으나, 불가피하게 보험금을 지급 (일부 지급 포함)한 건 |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 지급보험금의 5배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함 (지급한도 1천만원) |

□ 청구기준

1. 본 규정은 "보수의 추가 지급"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임인은 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보수를 청구할 경우 객관적인 조사 과정과 결과를 근거로 위임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 범위는 위임인이 판단한다.
3. 수임인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민·형사소송(소추 포함)으로 진행되더라도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보수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4. 제외 대상
 - ① 위임 당시 손해조사의 결과가 예상되는 건
 - ② 위임 당시 손해조사의 결과가 예상되지 않으나, 통상적인 손해사정 절차 또는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건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禁합니다.

여비 · 교통비 지급기준

□ 지급기준

| 구분 | | 지급기준 | 비고 |
|-----|--------------------|---------------|--|
| 교통비 | 철도임 | KTX(일반실) | 특실 이용시 차액 제외 |
| | 항공임 | 실비 | Economy |
| | 선임 | 실비 | 1등실 |
| | 고속(시외)버스 및 기타 교통수단 | 실비 | TAXI 이용시 2회 이상 환승 또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限 (사유 기재) |
| | 업무용 승용차 | 유류비 및 통행료(실비) | 아래 참조 |
| 일비 | | 30,000원 정액 | 법정공휴일 · 토요일 : 60,000원 |
| 숙박비 | | 50,000원 한도 | 1일당 실비 |

□ 산정기준

1. 대한민국내 선임손해사정 법인의 본 ·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市 · 郡단위 기준, 동일市 · 郡은 편도 50KM 이내)의 여비 · 교통비 중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他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同 「여비 · 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업무용 승용차 이용시 유류비 : 주행거리 × ℓ 당 요금 ÷ (평균연비)
 ※ 거리기준 : 네이버 "빠른 길 찾기" 기준
 ※ ℓ 당 요금 : 한국석유공사 공시기준 참고 (www.petroleum.or.kr)
 ※ 평균연비 : 경유 · 휘발유용 차량 8km/리터 (단, LPG용 차량 8km/리터)
3. 대중 교통비 및 숙박비는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입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4. 경비 인정기준

경비는 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① 위임인의 시스템(PRM시스템 등)상 "진행관리" 화면에 일시 및 소요시간, 장소, 목적,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②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상 일자별 세부내역 정리 기재

5. 기타 제비용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하며, 통상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인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별도 실비를 정할 수 있다.

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倫 理 誓 約 書

당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업체로서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 및 사회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배하는 불공정 거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삼성화재의 고객을 당사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언제나 고객만족의 보상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탁받은 업무수행시 관련 법령 및 업무위탁계약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삼성화재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유형의 금품, 선물, 향응 및 음식물 제공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삼성화재의 협력업체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유형의 금품, 선물, 향응 및 음식물 등 일체의 접대를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 기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당사는 삼성화재의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며,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제안 및 건의사항의 발생시 협력자적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배하여 삼성화재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삼성화재(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 및 제재조치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4월 1일

106-86-30223 (인)

삼성화재해상
보험(주) 임철상
서울특별시 동탄구 동라동 19-40 남원빌딩 7층
서비스손래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본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금합니다.

保 安 誓 約 書

1. 당사와 당사 임직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 (보수 기준을 비롯 동 계약내용을 포함한다)를 위임 계약 상 업무에 한해 정당하게 이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와 당사 임직원은 삼성화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및 위임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으며, 임직원 퇴직 시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수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에 대해서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3. 당사와 당사 임직원은 삼성화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및 모든 사고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와 당사 임직원은 당사에 PRM시스템 등 삼성화재의 전산시스템과 할당된 ID 및 패스워드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여 오직 당사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시스템의 접근, 열람을 허용하거나 ID 및 패스워드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와 당사 임직원은 위임업무와 관련된 삼성화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6. 당사와 당사 임직원은 이와 같이 삼성화재의 위임계약업무 수행 당시 취득한 모든 고객정보 및 삼성화재에 관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위임계약 해지 후에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당사나 당사임직원 또는 당사의 수탁업체가 (업무의 수탁은 삼성화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배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책임을 비롯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이며, 아울러 삼성화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시킬 것이며, 삼성화재가 결정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 계약상 변동사항을 이의없이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0 2014년 4월 3일 22:30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임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본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위임인")가 크라운글래스원(주) (이하 "수임인")에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약정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목적외의 사용 금지 및 재위탁 제한)

- ①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손해 사정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②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사전에 "위임인"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안된다.
- ③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임인"의 제공목적에 해당하는 업무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금지한다.
- ④ 상기 ①~③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임인" 또는 "위임인"의 고객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수임인"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조(활용 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

- ①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각각에게 전용 ID 부여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한다.
- ② "수임인"은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경우 ID 및 패스워드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해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수임인"은 "위임인"의 개인(신용)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각 이용자의 ID 및 패스워드의 공유·누설을 금지하며, "수임인"은 각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 4 조(개인(신용)정보의 송·수신)

- 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수신하는 경우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암호화하여 송·수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PC통신, CD, M/T(Magnetic Tape) 등을 통하여 송·수신할 경우 대상문서 전건에 PASS-WORD를 설정하여 당해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관련부서와 협의 후 제공하여야 한다.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제 5 조(개인(신용)정보 폐기 및 반납)

- ①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사용 또는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폐기하거나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에 의거 “수임인”이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임인”은 “수임인”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폐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임인”의 사무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책 임)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임인”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수임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위임인”은 제휴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 7 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 ① 이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임인”과 “수임인” 상호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활용과 관련한 계약이 유효한 한 이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②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8 조(교 육)

“수임인”은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본 약정을 증빙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위임인”과 “수임인”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14년 4월 1일

위임인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안 민 수 (인)



수임인 : 106-86-30221

인력관리팀장
사무장 손태성(인)
인력관리팀
사무장 손태성(인)
시 비 스
손태성



본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별첨5-1

분쟁예상보고

■ 개 요

| | | | |
|-------|--|----------------------|------|
| 법인명 | ○○ 손해사정법인 | 손사법인담당자 | |
| 인 원 인 | 관계 | 피보험자의 () | 연락처 |
| 청구번호 | 보험종목 | | 증권번호 |
| 분쟁유형 | 소송 <input type="checkbox"/> 금감원 <input type="checkbox"/> 소비자보호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분쟁사항

| | |
|-------------------|--|
| 인원인 요구사항 | |
| 쟁 점 및 문제점 | |
| 진행사항 | |
| 대응방안 및 요망사항 | |

2014 . . . 담당자 : (인) 대표자 : (인)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禁합니다.

별첨5-2

민원 발생 원인 및 대책

■ 금감원 접수번호 : 110-20140000-0000 (통보일 : '14.00.00)

■ 계약사항

| | | | |
|------|--|------|--|
| 청구번호 | | 증권번호 | |
| 보험종목 | | 보험기간 | |
| 담보사항 | | 분쟁금액 | |

■ 민원사항

| | | | |
|-----------------------|----------|-----|-----------|
| 민원인 | (남/여, 세) | 관 계 | 피보험자의 () |
| 민원요지 | | | |
| 쟁점 및 문제점 (발생원인) | | | |
| 진행사항 | | | |
| 대응방안 | | | |
| 재발방지 대책 | | | |

2014 . . . 담당자 : (인) 대표자 : (인)

본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손해사정 중간보고

수 신 : ○ ○ ○ 책임 귀하
 참 조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센터장
 제 목 : 손해사정 중간보고

3155-19803040-2018-1667

당사에서는 아래 수입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손해사정
 중간결과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 | |
|--------|--|---------|--|
| 삼성청구번호 | | 당사접수번호 | |
| 보험종목 | | 증권번호 | |
| 계약자 | | 피보험자 | |
| 조사자 | | 대표손해사정사 | |

별 첨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 ○ ○ 손해사정 (주)
 대표이사 (인)

3155-19803040-2018-1667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입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손사법인 윤리경영 양정기준

| 구 분 | 윤리경영 위배사항 | 수입 계약상 불이익 내용 |
|--------------------------------|---|--|
| 경영상 不實 |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위배 위임계약 및 관련법령 위배 | 20일 이상 위임중지 또는 계약 해지 |
| | 당사 윤리경영 관련교육 미실시 | 경고 또는 10일 이상 위임중지 |
| | 당사 윤리경영 관련지침 위배 | 경고, 한시적 위임중지 또는 계약 해지 |
| | 보수 가압류 발생 | 30일 이상 위임중지(가압류발생일로부터 해제일까지 미 산입) 또는 계약해지 |
| | 기타 모든 경영상 부실 | 사안에 따라 경고, 한시적 위임중지 또는 계약 해지 |
| 업무상 不實 | 손해액입증 사실 및 관련서류 확인부실 지연조사 및 최종(중간)보고서 제출지연 구상관련자료 부실 및 미확보 지급보험금 계산오류(1천만원 이하) | 경고 또는 10일 이상 위임중지 |
| | 기타 업무소홀로 기회손실 발생 | 30일 이상 위임중지 |
| | 회사 및 고객정보 유출 | 계약 해지 |
| | 불성실한 고객 응대 및 고객 불만 심화 시 | 경고 또는 한시적 위임중지 |
| | 지급보험금 계산오류(1천만원 초과) | 30일 이상 위임중지 |
| 기타 모든 업무상 부실 (위임보수 과다 청구 등) | 사안에 따라 경고, 한시적 위임중지 또는 계약 해지 | |
| 업무상 不正 | 과다견적, 편승수리 및 중복청구 목인처리 잔존물 예상낙찰가 유출 | 30일 이상 위임중지 또는 계약 해지 |
| | 손해액 평가기준 관련 이익 수취 잔존물 및 구상 관련 금품수수 잔존물 대금 횡령, 유용 관계자로부터 이익 수취 | 계약 해지 |
| | 손해사정 명의대여 등 기타 모든 부정 | 사안에 따라 30일 이상 위임중지 또는 계약 해지 |
| 영업상 不正 | 거래업체, 당사 임직원에게 대해 경조금, 행 사시 찬조금, 금품 수수, 향응, 상품권 (명절선물), 금전거래 제공시 혹은 거래업 체로부터 수혜시 | 사안에 따라 한시적 위임중지 또는 계약 해지 |
| | 기타 모든 부적절한 영업행위 | |

※ 연간 한시적 위임중지 2회 이상일 경우次年도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업무상 不實 또는 不正의 판단범위는 "수입인"이 거래하는 모든 업체를 포함한다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입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

'14년 손해사정위임계약 사항

계약 법인 사항

| | | | |
|------|-------------|-----|-----|
| 손사법인 | 리카운 손해사정(주) | 대표자 | 김철환 |
| 위임보증 | 배상책임 | 비고 | |

주요 변경 사항

| 항목 | 주요사항 | 설명 | | 주요사항 | 설명 | |
|------|--------------------|----|---|-----------|----|---|
| 계약사항 | 청렴계약조항 | ✓ | ✓ | 업무품질평가 | ✓ | ✓ |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 | 계약해지사항 | ✓ | ✓ |
| | 감사 및 품질점검 | ✓ | ✓ | 손해배상책임 | ✓ | ✓ |
| 보수기준 | 보수 추가지급 | ✓ | ✓ | 보수 지급시기 | ✓ | ✓ |
| | 보수의 감액 및 부지급 | ✓ | ✓ | 보험사기 보수기준 | ✓ | ✓ |
| | 보수 지급기준 및 여비교통비 규정 | | | | ✓ | ✓ |
| 기타 | 손사법인 윤리경영 양정기준 등 | | | | ✓ | ✓ |

이상과 같이 계약서 및 보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들었으며, 계약기간 동안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위임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장기보험보상팀장



수임인 리카운 손해사정(주) (인)

대리인 유상현

3155-19803040-13150286

3155-19803040-13150286